

# [양형위원회 제129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]

## 1. 양형위원회 제129차 회의 내역

- 일시 : 2024. 1. 8. 15:0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
- 주요 안건
  -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심의 및 수정안 확정
  -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형종 선택의 기준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심의 및 설정안 확정
  -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심의 및 수정안 확정

## 2. 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
- 양형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
- 2023년도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
-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등 방문 결과 보고
- 2024년도 상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
-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보고
- 2022 연간보고서 발간·배포 보고
- 2023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
-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
-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
- 2024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보고
-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

## 3. 전문위원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제158차 및 제159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

4.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심의

가. 권고 형량범위 및 방산기술 및 전략기술의 처리방안 논의

1) 대유형 3, 4의 권고 형량범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함

03 <sup>1</sup> 영업비밀 침해행위				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국내침해	<del>10월</del> 6월 - 1년6월	<del>8월 - 2년</del> 10월 - 3년	<del>1년 - 4년</del> 2년 - 5년
2	국외침해	10월 - <del>1년6월</del> 3년	<del>1년 - 3년6월</del> 1년6월 - 5년	<del>2년 - 6년</del> 3년 - 8년

  

04 <sup>1</sup>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				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누설·도용	- 8월	6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2	국내침해	8월 - 2년	1년 - 4년	2년6월 - 6년
3	산업기술 등 국외침해	1년 - 3년6월	2년 - 6년	4년 - 10년
4	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	2년 - 5년	3년 - 7년	5년 - 12년

2) 대유형 4의 특별가중인자로 ‘전략기술인 경우(4유형)’를, 일반가중인자로 ‘방위산업기술인 경우(1, 3유형)’ 및 ‘전략기술인 경우(2, 3유형)’를 각각 설정하기로 함

나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1) 양형인자

- 가) 대유형 1, 2, 3, 5에 관한 특별감경인자로 자수를 ‘자수,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’로 수정
- 나) ‘영업비밀(기술)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’의 정의

## 규정을 수정

### [영업비밀(기술)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]

-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, 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(피해자)에게 반환·폐기되어, 권리자(피해자)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.

다) 대유형 1, 2, 3, 5의 특별가중인자로 대유형 3에서 ‘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·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’을 ‘국가·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’로 수정/ ‘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’의 정의규정을 수정/ ‘권리자(피해자)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규정을 수정

### [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]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
  - 피고인이 권리자(피해자)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(피해자)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(피해자)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
  -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(피해자)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
  -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[권리자(피해자)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]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침해행위·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, 권리자(피해자)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
  -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
  - 권리자(피해자)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
  -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

-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
-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·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
- **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, 영업비밀,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**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라) 대유형 1, 2, 3, 5의 일반감경인자로 '영업비밀(기술)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'를 유지

마) 대유형 4의 일반감경인자로 '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'을 설정

## 2) 집행유예 기준

가) 대유형 1, 2, 5에 대한 기준, 대유형 3에 대한 기준, 대유형 4에 대한 기준을 분리

나) 대유형 3, 4에서 '형사처벌 전력 없음'을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

## 3) 위 심의 결과

-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## 4) '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'

- 대유형 4 및 1, 2, 3, 5유형에도 특별감경인자로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
- 대유형 4에서만 제외하고 대유형 1, 2, 3, 5에는 넣자는 소수의견 있음

## 다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심의

### 1) 양형인자

가) 일반감경인자 '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에서 '(공탁 포함)'을 제외하기로 함

- 그대로 두자는 소수의견 있음
-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 정비 등을 위하여 속행

나) 대유형 4의 특별가중인자로 '국가·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' 또는 '국가·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'를 설정하지 않기로 함

- 설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
## 5. 향후 일정

### 가. 제129-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(속행)

- ▣ 일시 : 2024. 1. 18.(목) 오후
- ▣ 안건 :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  
          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 및 의결  
          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